

지역맞춤형 고용촉진 장려금

 서울강남 고용복지+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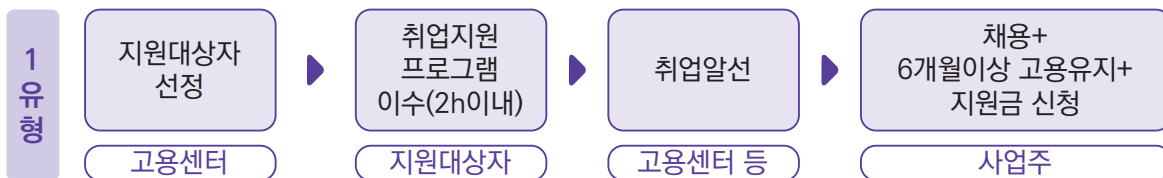


사업개요 및 지원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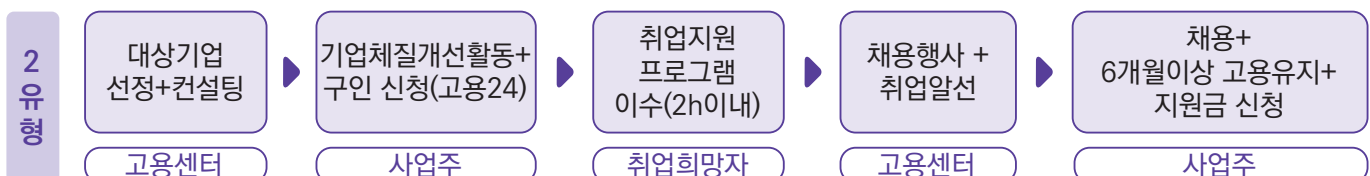
사업개요 지역별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고용센터 취업알선 및 고용사업주 지원

유형	서비스대상	지원내용
1 유형	① 훈련이수자 중 장기실업자(실업기간 3개월 이상) ② 장기실업 청년 및 고령자(55세이상) - 실업기간 3개월 이상 ③ 실업급여 장기수급자(120일 이상 경과자)	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알선
2 유형	① 도·소매업 ②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③ 정보통신업	기업컨설팅 채용지원서비스 장려금 지원

지원절차



*지원절차를 모두 충족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



*지원절차를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

유형별 지원내용

- 1

지원대상 강남구에 본사가 있는 사업주

지원요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센터 등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(구인·구직 신청 필수)
- 2

지원대상 강남구에 본사가 있는 도·소매업,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정보통신업종 해당 기업
*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도소매업(45~47),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0~73), 정보통신업(58~63)

지원요건 지원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업 중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참여 후 체질 개선 노력을 이행한 기업
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(구인·구직 신청 필수)

지원수준

- ☑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~60만원 지원

유형	회차별 지원액(6개월 단위)	연간 총액
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	360만원	720만원
대규모기업	180만원	360만원

- ☑ 지원기간: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

신청문의 서울강남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 02-3468-4815, 4851

지원제외

지원제외 대상 근로자

- ☑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- ☑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
- ☑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
- ☑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
- 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- ☑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
- ☑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
- ☑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

지원제외 대상 사업주

- ☑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- ☑ 일반·무도유희·기타주점업·갬블링 및 베팅업 등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」 제2조 해당 사업주
- ☑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☑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인 경우
- ☑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
- ☑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(중증장애인 제외)을 새로 고용한 경우
- ☑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
-(신청기간)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

고용조정 제한 의무

- 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~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장려금 지급 제한,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
* 다만,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 아님
- 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, 정년, 계약만료,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이 아님